#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4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문금주・박 정・문정복

이기헌 • 권칠승 • 김영배

황정아 · 정을호 · 이훈기

서삼석 • 김 윤 • 송옥주

이광희 · 문대림 · 윤준병

복기왕 • 김기표 • 이워택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축산업은 자연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및 국가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영향까지 겹치며, 농수축산업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고 있음.

이러한 위기는 농수축산업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예방 및 대비하고 재해를 복구하 는 등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안정과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 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안 제19조제 5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의안번호 제1713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5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수산발전기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3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	⑤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			
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법」 제46조에 따른 <u>수산발전</u>	<u>수산발전</u>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	기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농어업재해대		
	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